

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관세법」 제238조, 제240조의2, 제240조의3 및 <u>제277조 제3항</u>의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 및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사회안전 및 국민보건을 도모하고 시장경제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제277조</u> <u>제4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이동 반영
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소매업자”란 유통업자 중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를 말하며,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사용하는 제조공장(단순가공 제외)이나 <u>음식점</u> 등 소비처도 소매업자로 본다.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“관계 행정기관”이란 유통이력대상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<u>건설업체</u>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·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 품목 개편(공산품)에 따른 소매업자 유형 예시 변경 • 농·수산물 소관부처 이관 후

물품을 관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을 말한다.

7. ~ 11. (생략)

제3조(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) 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 “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수입 후 허위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 및 생산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등 시장질서·사회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

5. (생략)

제6조(표준품명 제정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표준품명은 수입자가 수입신고하는 때에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.

-----, 산
업통상자원부 -----
-----.

7. ~ 11.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유통이력대상물품 지정기준) 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 방법 등 위법한 행위로 사회
안전·국민보건 등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표준품명 제정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국가관세종합정보망-----
-----.

품목 개편(공산품)에 따른
관계 행정기관 정비

● 관세법(제240조의2) 규정과
일치하도록 조문 정비

● 관세법(제327조②)과 일치
하도록 용어 수정

제8조(유통이력신고 등) ① 유통이력신고 의무자는 별표 1의 수입물품을 양도하는 경우(양수자가 재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양도일부터 5일 이내에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·일요일,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~ 6. (생략)

② ~ ⑥ (생략)

제10조(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) ① 세관장은 법 제240조의3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신고의무자 사업장에 출입하여 영업관계 장부나 서류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조사는 소매업자를 포함한다.

제8조(유통이력신고 등) ① -----

----- . 이 경우 신고기간에는 양도 초일과 토·일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유통이력조사 및 결과등록 등) ① -----

----- . <단서 삭제>

• 관세법(제8조③)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외기간 명확화

•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아닌 소매업자를 유통이력조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단서 규정 삭제
* 법제처 사후심사 의견 반영

1. ~ 5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2조(과태료 부과)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발한 경우 법 제277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②·③ (생략)

제13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설>

1. ~ 5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과태료 부과) -----
----- 법 제277조제4항-----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재검토기한) -----

----- 2023년 7월 1일-----
----- 6월 30일-----
-----.

부칙<관세청고시 제2023- 호, 2023. . .>
이 고시는 2023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

• 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이동 반영

• 재검토 기준일 재설정

• 부칙 신설

[별지 제1호서식]

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				
신고자	업 체 명			대 표 자
	사업자등록번호			전화번호
	주 소			
수입물품 내역	수입신고번호	수입신고수리일자 (수리전반출일자)		
	품명	원산지		
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				
양도 (판매) 내역(I)	업태	업체명	사업자 번호	우편 번호
			주소	전화 번호
			거래량 (kg,개)	양도 일자
				사유
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(차량판매상, 노점상)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				
양도 (판매) 내역(II)	업태	성명	차량번호	전화번호
				거래량(kg,개)
				양도일자
* 업태는 차량판매상, 노점상,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 (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)				
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및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.				
신고일 : 년 월 일				
신고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○ ○ 세 관 장 귀하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※ 작성요령

-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인근 세관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* 기간(5일)은 판매 초일, 토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고 계산
- 양수자 유형(업태) : 유통업자, 소매업자, 최종소비자, 손실당, 수출
 - 유통업자 : 도매업체, 도소매 병행업체, 단속가공업체
 - 소매업자 :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(단속가공 제외)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
 - 최종소비자 : 최종적,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
 - 손실당 : 거래 사유란에 파손, 부패, 자가소비, 수분감량, 제조과정감량 등
 - 수출 :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(업체명(해외수입자명), 거래량, 수출일자,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)
 - *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, 노점상,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(판매)내역(II) 양식으로 신고
-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,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
- ※ 수입물품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며, 양도(판매)내역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
- 유통이력신고의무자(수입자, 유통업자)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

[별지 제1호서식]

수입물품 유통이력 신고서				
신고자	업 체 명			대 표 자
	사업자등록번호			전화번호
	주 소			
수입물품 내역	수입신고번호	수입신고수리일자 (수리전반출일자)		
	품명	원산지		
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판매한 내역				
양도 (판매) 내역(I)	업태	업체명	사업자 번호	우편 번호
			주소	전화 번호
			거래량 (kg,개)	양도 일자
				사유
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업체(차량판매상, 노점상) 또는 개인에게 판매한 내역				
양도 (판매) 내역(II)	업태	성명	차량번호	전화번호
				거래량(kg,개)
				양도일자
* 업태는 차량판매상, 노점상, 개인으로 구분하여 신고 (개인은 차량번호 미기재)				
「관세법」 제240조의2 및 「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」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물품 유통이력을 신고합니다.				
신고일 : 년 월 일				
신고자 : (서명 또는 인)				
○ ○ 세 관 장 귀하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※ 작성요령

- 양도 후 5일 이내에 작성하여 주소지 인근 세관장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 - * 기간(5일)은 판매 초일, 토요일, 「공휴일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하고 계산
- 양수자 유형(업태) : 유통업자, 소매업자, 최종소비자, 손실당, 수출
 - 유통업자 : 도매업체, 도소매 병행업체, 단속가공업체
 - 소매업자 : 유통업자 중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업체와 제조공장(단속가공 제외)이나 건설업체 등 소비처
 - 최종소비자 : 최종적, 실제적 소비자인 개인 등
 - 손실당 : 거래 사유란에 파손, 부패, 자가소비, 수분감량, 제조과정감량 등
 - 수출 : 수입물품을 재수출하는 경우(업체명(해외수입자명), 거래량, 수출일자, 사유란에 수출신고번호 기재)
 - * 소매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차량판매상, 노점상, 최종소비자 중 개인은 양도(판매)내역(II) 양식으로 신고
- 유통이력신고의무는 수입자와 유통업자에만 있으며 소매업자, 최종소비자는 신고의무가 없음
- ※ 수입물품 내역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기재하며, 양도(판매)내역은 별지에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음
- 유통이력신고의무자(수입자, 유통업자)는 유통이력대상물품을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음

- 제2조4호, 제8조제1항 개정안 반영

[별지 제2호서식] 유통이력 미신고·허위신고·장부 미비치 확인서<제10조제2항 관련>

[별지 제5호서식]

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					
수입 물품	수입신고번호			신고수리일	
	양도자			거래일자	
	양수자			총 거래량	
	관번호	품명	세번번호	원산지	수량(중량:KG)
안 내 사 항	<p>① 본 물품 (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「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은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 등을 거쳐 유통되는 물품 포함) 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UNI-PASS 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, 「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」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/p> <p>② 단순가공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.</p> <p>③ 물품 구매자(양수받는 자)가 동 고시 제2조제3호(소매업자) 및 제4호(최종소비자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(양수자)에게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				
	년 월 일				
	○ ○ 세 관 장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[별지 제2호서식] 유통이력 미신고·허위신고·장부 미비치 확인서<제12조제2항 관련>

[별지 제5호서식]

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의무 통지서					
수입 물품	수입신고번호			신고수리일	
	양도자			거래일자	
	양수자			총 거래량	
	관번호	품명	세번번호	원산지	수량(중량:KG)
안 내 사 항	<p>① 본 물품 (별표 1 유통이력대상물품 중 「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제11조에 의한 원산지표시의무 이행통지 대상물품은 수입통관 후 재포장분할포장단순가공 등을 거쳐 유통되는 물품 포함) 은 관세청의 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으로 양도 후 5일 이내에 UNI-PASS (https://unipass.customs.go.kr)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, 「수입물품 유통이력신고서」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이를 위반시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</p> <p>② 단순가공 여부는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 해당하는 가공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.</p> <p>③ 물품 구매자(양수받는 자)가 동 고시 제2조제4호(소매업자) 및 최종소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(양수자)에게 유통이력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.</p>				
	년 월 일				
	○ ○ 세 관 장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- 관련 조항 오류 수정
- 인용 고시 및 인용 조문 오류 수정